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7. 15 선고 2020가단2242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김현영

피고B

변론 종결2021. 5. 27.

판결 선고2021. 7. 15.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2. 18. 접수 제17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6. 18.경까지 C에게 합계 7,000,000원을 이자 연 18%, 최종 변제기 2003. 10.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소335394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0. 6. 23.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22,235,397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C는 2020. 2. 13. 자녀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0. 2. 18.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장군수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C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던 중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공제하면 이 사건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식당 운영을 위하여 이전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피고가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와 피고 사이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반복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오윤경

별지